



3600 Wilshire Blvd. #2010  
LA, CA 90010

TEL: 877.545.1001  
FAX: 877.545.1004



## IRA 은퇴연금 플랜

IRA 은퇴연금 플랜은 정부에서 개인의 은퇴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면서 개인이 알아서 은퇴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 은 갈수록 작아지고 고갈되어 2037년 이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IRA 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Account 를 만들면 이 Account 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Tax Deduction)를 해 주는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 IRA에 적립한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수입총액에서 5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 수입으로 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세금보고를 하기 전 까지 IRA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0 인 홍길동씨가 IRA 에 \$5,500 을 저축했다면 홍길동씨는 세금 보고할 때 \$5,500의 세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연봉을 \$44,500 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IRA 에 저축한 \$5,500은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RA 에 저축된 \$5,500 이 이자를 받던 수익이 나던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IRA가 아닌 일반 금융 Account에서 \$5,500 원금이 \$500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 \$500에 대해서 해당연도 세금 보고할 때 바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IRA에서 \$5,500 원금이 \$500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Defer 됩니다.

IRA 는 이렇게 세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저축된 금액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큰 혜택이 됩니다.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은 회사 은퇴연금 계좌로 \*고용주가 자신과 종업원의 은퇴계좌를 만들어 적립하고 세금공제 혜택도 받는 절세 플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란 자영업자 파트너십 사업자 주식회사와 LLC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SEP의 특징으로 고용주는 자신의 은퇴플랜과 같은 비율로 종업원의 은퇴플랜에 돈을 적립하고 고용주는 사업소득에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공제 혜택에 덧붙여 비즈니스가 좋지 않을 때는 적립금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되고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불입을 해줄 수 있기에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을 위한 베타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SEP IRA는 일반형 개인 은퇴계좌보다 세금공제폭이 커서 매년 소득의 25% 또는 최대 5만 4000달러 중 낮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BE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  
February



Helping you  
Live Your Life.

News Letter

비즈니스 보험상식

**Co-Insurance**

Co-Insurance라는 조항은 거의 100%모든 비즈니스 보험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Co-Insurance의 취지는 가입자가 보험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보상 한도액을 터무니 없이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을 들어야 할 만큼 보유하시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 조항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설명이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매상을 하시는 A사장님께서서는 실제로 50만불 값어치의 재고를 가지고 계시지만 물품의 보험 한도액을 20만불로 정하셨습니다. 이 때 보험약관에 Co-insurance는 8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50만불에서 최소 80%인 40만불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인데 A사장님은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이유로 20만불만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회사 요구의 50%만 가입하신 것이죠. (Deductible은 1000)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하여 10만불 어치의 물품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A사장님께서서는 한도액 20만불 이하인 10만불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디덕터블 1000불을 제외한 \$99,000을 보상 받을 것을 예상하십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49,000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co-insurance조항에 의거하여 40만불을 가입해야하나 50%인 20만불만 가입하였으므로 배상도 50%인 \$50,000 받으며 이 금액에 디덕터블 1000까지 제외하면 \$49,000를 배상받게 되시는 겁니다.

위의 예처럼 보험비를 아끼기위해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사업규모가 작을 때 보험을 가입하신 후 사업규모가 커가고 재고가 늘어나지만 Co-insurance조항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웃고갑시다**

직장인 웹툰

말이 잘 안나오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혼자 있고 싶어요..

실어증입니다.



- Auto
- Commercial
- Worker's Comp
- Home
- Life
- Health

